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건설폐기물용역의 적격심사 적용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35호) 제7조제3항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연관하여 질의

- 제7조제3항중 주요내용

1.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신인도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공동도급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수행능력실적 평가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5호) 제7조제3항은 시설공사의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35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에서 직접 심사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E/S)에 의한 조정시 산출방법 관련 질의

【질 의】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개별품목(기자재) 단가산정 시 당초 실시 설계서에 등재된 제품의 거래실례가격 재산정방식에 관하여 질의

- 당초 실시설계 시 적용된 업체의 견적(거래실례가격)으로 해당 품목의 단가를 산정한 경우, 일괄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업체의 견적으로 등락을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조건의 타업체 견적으로 단가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등락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가격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산정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란 계약당시의 견적가격에 의한 가격산정을 한 경우 물가변동 당시 가격산정도 견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견적을 제출한 업체까지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가격낙찰자 선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추정가격 1억9천만원의 상수도전문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의 전

자입찰시스템(G2b) 조작미숙으로 입찰공고문상의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낙찰율 86.745%)”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다르게 “2억원미만(낙찰율 87.745%)”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1순위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공고하여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선금금 지급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공사 계약 체결하여 선금으로 수령(계약금액대비 29%)하였으며 5개월 후 공사실적에 의하여 기성금(23.9%)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선금금 지급액(29%)보다 기성금 청구액(23.9%)이 낮으므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한 시설공사에 있어 기성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114호) 제5조에 의거 기성금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파트건립공사 등의 입찰집행에 따른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기초금액의 $\pm 3\%$ 에서 15개를(+3% 7개, -3% 8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정가격이 높게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이 높아지고, 분양금액이 상승되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미분양 시 자금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복수예비가격을 94%~100%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50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예정가격을 하향조정하여 공사원가를 낮추고자 한다면 설계서를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시공실적 인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댐조성에 의한 수원지 및 취정수 시설물에 대한 실적제한 입찰 시 제당길이 100m이상, 제당높이 20m이상인 단일 시공실적에 관한 질의

- 갑설 : 전체 제당길이 100m이상, 높이 20m 이상인 것만 유효한 단일실적이다.
- 을설 : 전체 제당길이 100m이상, 높이는 일부분만 20m이상인 것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회 신

귀질의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당길이 100m이상, 제당높이 20m이상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1배 이내이어야 함.

제당 높이에 관한 상황은 설계서(도면 등 포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것임. 다만, 설계서에 정하여 지지 않았다면 발주자가 사전에 이를 입찰설명서 등에 안내하거나 공고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7.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7천만원이하의 전문공사 입찰공고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지역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대상을 당해 시·군업체 중에서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8. 실적인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온실 신축공사에 따라 『온실 신축공사(기초금액 145,000천원)』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금속창호물·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단일공사로서 유리온실 180㎡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공사입니다.

1순위업체가 제출한 실적(○○신축 공사 중 철물공사)중에 일부분이 유리온실설치(200㎡)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온실 부분을 단일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제2호에 “단일공사”란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구조물로서 전체 공사내용 중 인정되는 실적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단일공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질 의】

공동도급으로 추정가격 60억원의 시설공사 현장설명에 참여한 A·B(대표사), C(구성원) 업체가 A+C, B+C로 C업체가 현장설명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A·B사(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은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경영상태 실적인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2003년도 정기결산서를 회사의 사정으로 협회에 제출하지 못하여 경영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로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 〈별표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증축공사를 A사와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A사의 부도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우에는 처리방법은

문1) 공사포기원이 접수 되면 먼저 선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선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2) 연대보증인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나머지 금액과 상관없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타절정산 후 나머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방식으로 다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지요.

문3) 타절정산하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문4) 타절정산 후 선금, 계약보증금을 먼저 회수하고 국세체납액, 근로복지공단채납액을 다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다른 채권압류금(자재비 채권압류금)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금, 계약보증금을 먼저 공제하고 국세체납액 보다 먼저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금,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후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는지?

문5) 선금, 계약보증금을 회수 할 때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금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절정산액에서 공사대금에서 전액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문6) 타절정산 금액보다 채권압류 금액이 초과된 경우 동 공사를 맡은 다른 계약자에게 채권압류가 승계되는지?

문7)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하는지?

회 신

① 문1)에 대하여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금미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타절준공 후 기성대가로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상계처리 후에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선금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② 문2)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 타절 후 잔여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입찰에 의할지 수의계약에 의할지는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③ 문3)에 대하여

- 대가 청구시에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문4)에 대하여

- 계약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 선금미정잔액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상계처리가 곤란하거나 미정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라면 타절기성검사 후 선금을 상계처리 또는 보증회사에 청구하고 노임을 제외한 기성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하므로 민사관련법령에 의거 공탁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문5)에 대하여

-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⑥ 문6)에 대하여

- 공사 이행부분만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미이행 부분은 압류대상이 아니며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⑦ 문7)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합니다.

12. 특허제품 협약서 체결 관련 질의

【질 의】

저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전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시에 특허제품이 적용되어 입찰공고문 유의사항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특허협약서”를 제출치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로 심사대상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낙찰 후에 특허개발자에게 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특허개발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협약서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저희로서는 특허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허내용상 “특허공법”(기술료 지급대상)이 아니라 “특허제품”이므로 낙찰자가 시중에서 협약서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해도 개발자로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자는 입찰유의사항에 공고된 협약서 제출 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시설공사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은 지방재정법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허가 아니고 시중에서 별도의 협약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제품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13. 동일공사에 발주기관이 변경된 경우 실적인정 관련 질의

【질 의】

최초 1992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년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하는 계속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도로가 △△시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되어 1995년에 △△시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로 공사가 이관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도로공사입니다. 이 경우 단일도로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공 중 도로관리기관의 변경으로 발주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1건의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4.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 다-2항의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의 범위가 회계과(또는

재무과)의 계약 및 입찰사무부서(계약관리계)의 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관리계의 직원도 시행하는 입찰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참여 할 수 있는지에 여부 질의

회 신

행자부 예규 제50호 다항 2목의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란 현재 진행중인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실무자 및 담당부서직원(“계”또는“팀”단위), 협조결재자, 중간결재자 및 최종결재자를 말함] 을 제외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입찰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 추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하기 위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 계약체결 관련 질의

【질 의】

시설공사 입찰 후 1순위자가 적격심사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2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발주기관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개찰 후 예산의 삭감 등으로 인하여 현재 회계연도에 공사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재공고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발주기관에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문서상 없으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기계속공사가 아니라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예산은 새로운 입찰 방법에 의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6. 시공실적 인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2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이행 중 1개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공사를 잔여구성원이 이행하고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현행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2004. 2. 6)에 의하여 잔여구성원이 전체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적증명서가 발급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2004. 2. 6)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 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도 등의 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잔여 시공자는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 물가변동 관련 질의

【질 의】

공사현장이 중국에 있는 공사로서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

- 당사자간 계약조건상 물가변동은 “지수조정율”에 의하도록 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설계변경 등 제반여건은 중국현지기준에 의함”으로 계약
-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중국현지에는 “지수조정율”에 대한 적용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한 방법(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중국에서 시공되는 공사로 현실적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 하에 물가변동이 가능한 방법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8.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질 의】

담당공무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하여 2002년 10월 담당공무원을 징계 처분한 경우 해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시점(2004. 12월)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당해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할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실제로 제한행위를 하려면 당해사실의 인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공사발주 시 설계 내역상의 자바라설치공사의 단가산출을 견적서 단가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견적서상의 단가산출 시 자바라에 대한 단가만 산정되어 있고 자바라하우스(콘크리트 구조물)는 누락된 경우 발주처에서는 견적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규정에 “설계서”라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현장상태를 종합 검토하여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용역사업을 갑·을 두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 받아 갑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갑 업체에서 제출한 면허증이 허위서류인 것을 발견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와 행정절차법에 의한 부정당제재를 하려면 가와 나 문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별표2와 관련하여

가. 제1호의 1년이상 2년이하의 경우 바목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문의사항 : 위 항에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자라함은 수의 계약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제2항의 6월 이상 1년 이하의 경우 마 목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문의사항 : 위 항의 입찰 또는 계약에 (수의 계약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고나, 계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에 의한 가격 및 업체 결정

회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에 관한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면허증은 계약관계서류에 해당 될 것입니다.